



제429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과정 운영시 토론식 수업 적극 활용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48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교육과정 운영시 토론식 수업 적극 활용	3
2. 개정안 부칙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9. 10.

3. 회 부 일 : 2025.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교육과정 운영시 토론식 수업 적극 활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생략)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u>
<u>② ~ ④</u> (생략)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 ----- ----- -----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 ----- ----- ---제23조제3항·제4항---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¹⁾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 개정안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사고능력 및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생들에 대한 암기 중심의 수업 등을 지양하고 토의·토론 방식을 통해 교과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사고력을 키울수 있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토의·토론 방식의 수업은 인문·사회 계열 교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지만, 학생별 수준과 수업 내용, 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敎授)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토론식 수업 방식을 법에 규정하려고 하는데, 교수·학습, 평가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²⁾에서는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보다 그 규율의 정도가 낮은 “고시” 형태의 「교육과정 총

2)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2. 교수·학습

나-1)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 하며,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급학교와 학생,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토론식 수업 활용에 대하여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하위 법령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아울러 수업 방법은 교육 내용, 과목 특성,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교육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학문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교원이 선택할 사항으로³⁾, 특정 수업 방법 활용에 대한 법제화는 법률로 교수 방식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교원의 자율성·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가교육위원회

토의·토론 능력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 입법취지에 공감함.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에 토의·토론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입법안과 같이 특정 교육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존 법률⁴⁾과의 관계 및 법체계⁵⁾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토의·토론 등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사안은 교사가 전문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해야할 영역이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3) (예시) 설명식, 토의·토론식, 협력학습, 프로젝트식, 놀이·게임식, 탐구식, 발표식, 자기주도식, 체험방식 등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업 방법을 법률로 한정하기보다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도 교육청

개정안의 초·중등교육법 조문으로서의 적절성,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기본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23조 제2항 위배 문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과의 중복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교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전문성을 저해하여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더 할 수 있음.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상북도 교육청

특정한 수업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다양한 수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칫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력과 대화·타협의 태도 함양은 매우 중요한 교육 목표이지만, 이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반을 통해 종합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사항임. 이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토론식 수업은 그 중 하나의 실천 방법이므로, 본 개정안에서 ‘토론식 수업의 적극 활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낮아 보임.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함. 즉, ‘토론식 수업’과 같은 교수·학습법은 하위 법령이나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다루고, 개정안에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함.

대전광역시 교육청

본 개정사항은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됨. 또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성취기준 도달을 위해 학생의 발달 수준, 학습 단계, 교과 특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구성·운영하는 영역으로, 같은 주제 및 내용이라도 다양한 방

식이 적용이 허용되어야 함. 따라서, 토론식 수업과 같은 특정 교수학습 방식은 법령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

충청북도 교육청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함. 또한, 교사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수업권을 갖고 있음.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자 교원의 전문성을 의미함. 토론식 수업은 이러한 자율적 운영의 한 형태로 학교 여건과 교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는 교사가 교육 내용과 학생의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교수법을 선택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제2항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학교에서는 토론식 수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